

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6. 11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, 한파, 폭우, 폭설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군민의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확대됨에 따라 기후보험을 통해 군민의 피해 구제, 기후격차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의2)

나.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의3)

다. 담양군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의4)

-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군민의 피해에 대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담양군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가능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6. 10. ~ 6. 15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및”을 “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및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을
“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시행과정”을 “시행 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
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”을 “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”으로
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적응역량”을 “적응 역량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감축목표 (이하”를 “감축목표(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
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기후위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”를
“기후위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)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
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
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할

수 있다.

제9조의3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 군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·기후위기에 따른 이상 기후·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(이하 “기후위기 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재해 노출 실태,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의4(담양군 기후보험 지원) ① 군수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군민(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담양군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「담양군 환경기본 조례」 제26조”를 “「담양군 환경기본 조례」 제26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확대·보급”을 “확대 및 보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·사업자”를 “주민, 사업자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에너지이용”을 “에너지 이용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충전시설”을 “충전 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반시설”을 “기반 시설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)”를 “(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)”

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위하여 「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”를 “위하여 「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전문인력”을 “전문 인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----- -----.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 시행과정----- ----- -.
③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<u>전담조직</u> 을 운영하고 <u>전문인력</u> 확보에	③ ----- ----- ----- <u>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</u> -----

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주민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·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온실가스 감축 목표) ① (생략)

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담양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(이하 “감축목표”라 한다)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담양군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7조(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)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, 전라남

도

④ -----

----- 적응 역량 -----

-----.

제6조(온실가스 감축 목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감축목표 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때는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) -----

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후위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
5. ~ 7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기후위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)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의3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 군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·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·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

<신 설>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
(생 략)

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
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
위하여 「담양군 환경기본 조
례」 제26조에 따른 환경정책위
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
있다.

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
(이하 “기후위기 취약계층”
이라 한다)의 재해 노출 실태,
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
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의4(담양군 기후보험 지원)

① 군수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
향에 따른 군민(등록된 외국인
을 포함한다)의 건강 피해에 대
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
는 담양군 기후보험 가입에 필
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
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
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
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
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「담양군 환경기본 조례」 제26
조-----
-----.

제13조(친환경에너지 전환) ①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의 확대·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주민·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·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(이하 “녹색건축물”이라 한다)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녹색교통의 활성화) ① 군수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

제13조(친환경에너지 전환) ① --

----- 확대 및 보급 -----

-----.

② ----- 주민, 사업자 -----

-----.

제14조(녹색건축물의 확대) ① --

--- 에너지 이용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녹색교통의 활성화) ① --

충전 시설 -----
-----.

② -----
기반 시설 -----

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16조(<u>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</u>) ① · ② (생 략) 제17조(1회용품 사용 제한)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<u>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제18조(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)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 · 홍보를 확대하고,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<u>전문인력</u>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. 제16조(<u>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(1회용품 사용 제한) ----- ----- ----- 위하여 「<u>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. 제18조(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문 인력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